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18 선고 2020가합1037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최단비, 홍성필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법운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1. 가. D과 피고 B 사이에 2018. 1.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8년 제168호의

공정증서에 기해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하고,

나. D과 피고 C 사이에 2018. 1.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8년 제189호의 공정증서에 기해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8,883,261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39,254,35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2,090,750원을 470,228,362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 비 적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및 D이 2018. 1. 2. 피고 B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소멸되는 시효이익포기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관련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대출 등 채권의 회수정리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업무 및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정리금융기관의 설립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자이다.

2) 피고 B은 2018. 1. 24. D과 'D은 피고 B에 대하여 652,000,000원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8. 1. 30.에 일시불로 변제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1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서 2018년 제168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

3) 피고 C는 2018. 1. 29. D와 'D은 피고 C에 대하여 총 290,9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원금은 2018. 2. 6.에 일시불로 변제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2016. 8. 8.자 대여금 15,900,000원은 연 15%의 비율로 매월 8일에 지급하고, 2017. 1. 23.자 대여금 75,000,000원은 연 15%의 비율로 매월 23일에 지급하며, 2018. 1. 8.자 대여금 100,000,000원은 연 12%의 비율로 매월 9일에 지급하고, 2018. 1. 29.자 대여금 100,000,000원은 연 12%의 비율로 매월 29일에 지급하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공증인 E에서 2018년 제189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 한다).

나.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 등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6. 23.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0,089,44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8543호 사건).

2) 원고는 2019. 2. 7. 위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D의 G에 대한 판결금 채권[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7324호 보관금 반환 사건(이어지는 부산고등법원 2018나50966호 사건, 대법원 2019다263523호 사건, 이하 포괄하여 '관련 소송'이라 한다)의 결과에 따라 G이 D에게 지급할 금액 중 청구금액 3,567,892,40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다(부산지방법원 2019타채1021호 사건). 그리고 원고는 2019. 2. 27. 당시 계속 중이던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지위에 있던 D을 승계참가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제1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9. 4. 1. 위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G이 D에게 지급할 금액 중 청구금액 727,488,59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다(부산지방법원 2019타채53470호 사건). 그리고 피고 B은 2019. 4. 3.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지위에 있던 D을

승계참가하였다.

- 4) 또한 피고 C는 이 사건 제2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9. 4. 1. 위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G이 D에게 지급할 금액 중 청구금액 386,796,13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다(부산지방법원 2019타채53477호 사건). 그리고 피고 C는 2019. 4. 3.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지위에 있던 D를 승계참가하였다.
- 5) 관련 소송 제2심에서 ‘G은 원고 및 피고들에게 3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2. 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다. G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 1) G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피고들은 확정된 판결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475,174,932원(2020. 8. 18. 배당일 기준) 중 채권액별로 안분한 금액 68,883,261원, 39,254,351원을 각 채권금액으로 신고하였다.
- 2)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법원은 2020. 8. 18. 배당할 금액 889,286,079원에서 집행비용 8,922,197원을 공제한 나머지 880,363,882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된 후, 피고 B에게 배당순위 2순위로 68,883,261원, 피고 C에게 배당순위 2순위로 39,254,351원, 원고에게 배당순위 3순위로 362,090,75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호증, 을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D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로 각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D은 무자력이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이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얻게 될 G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G에 대한 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의 각 배당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가사 피고 B이 D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D이 피고 B에게 'D은 피고 B에 대하여 총 652,0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2018. 1.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 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2018. 1. 2. 무렵 이미 상법 내지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D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의사표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실제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전체적으로 D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피고들이 원고를 우선하여 그 채무를 변제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피고 B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우선, 앞서 든 증거들, 을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D에게 2004. 5. 3. 12,800,000원을 비롯하여 2005. 8. 12.까지 총 404,000,000원을, 피고 C는 D에게 2016. 8. 8. 15,900,000원을 비롯하여 2018. 1. 29.까지 총 290,9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위 돈이 D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허위라고 주장하므로, 피고들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D과 피고들이 가족관계 내지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고, 피고들이 제출한 각 차용증은 언제든 허위로 작출 가능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H 주식회사 통장 사본(을 6호증)에 기재된 ‘피고 B 차입’ 등의 수기 메모 내용 역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과 피고 C가 가족관계 내지 특수한 인적관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D과 피고 B이 형제 사이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제출한 각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 통장 사본(을 제6호증)의 수기 작성 메모가 모두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각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의 법적 성질은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원고는 피고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2019. 5. 30. D이 4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이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들은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들이었다가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에 참여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채권자인 원고와 함께 안분배당을 받았다. 즉,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D의 책임재산, 즉 G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피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만한 기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5. 31.자 2012마712 결정 참조).

한편,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8. 1. 2.경 피고 B에게 대여금 채무의 총 원리금을 확정하고 그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의 D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 관련 차용증(을 3호증)에 그 차용일시와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변제기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점, D은 피고 B로부터 2004. 5. 3.부터 2005. 8. 12. 사이에 6차례 돈을 차용한 이후 피고 B로부터 계속하여 변제를 유예받다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2018. 1. 2.경 모든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2018. 1. 30.로 최종적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D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언제인지 특정할 수가 없어 위 각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D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현영, 판사 최지연, 판사 이호태